

해양수산의 헌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Value in Maritime and Fisheries

홍선기(Sun-Ki, Hong) / 강문찬(Mun-Chan, Kang)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생

논문접수 : 2017. 5. 12.

심사게시 : 2017. 5. 15.

게재확정 : 2017. 6. 15.

목 차

- I. 서론
- II. 해양의 가치
- III. 헌법상 해양수산에 관한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IV. 헌법 개정 방안 제시
- V. 맺으며

국문요약

최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고(2017년 2월), 그 위원과 자문위원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주요 헌법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에 제때 대응하고, 그러한 변화 등에 발맞추어 우리의 위상에 비추어 규범성이 약했던 해양 발전 부분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산·어업 분야의 보호·육성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대로 된 법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전문 학회의 의견이 반영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에 꼭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기본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우리 헌법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본 규범을 두고 있는데, 다만 제9장 경제 부분 제120조 및 제123조의 어업권, 어업육성, 농어촌 개발 및 어민보호 등의 단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은 해양주권, 해양영토, 해양수산업 등 해양과 수산 분야 일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하고, 해양환경, 해양도시, 해양안전 등 미래 해양수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발전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토대가 될 만한 규정은 사실상 두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여 국가 정책과 입법이 해양 주권과 해양 경제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 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해양자원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기본 법률에 필요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선진 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인식과 상황의 변화 및 국제적 관심사와 조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규범성이 약했던 해양 분야의 발전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산·어업 분야의 보호·육성 등 ‘국가 해양수산 미래 발전의 백년대계’를 제시할 수 있는 선진 법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헌법을 비롯한 관련 기본법제 규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때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해양, 해양수산, 해양법제, 헌법, 영토조항, 경제조항

1. 들어가며

해양은 인류에게 남겨진 유일한 미개척지이자 자원의 보루로서 그 활용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동해안은 북한한류와 동한난류가 만나서 교차하는 조정 수역을 이루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으로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두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의 항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중심지로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양과 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본 규범으로서, 현재에도 그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최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고(2017년 2월), 그 위원과 자문위원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주요 헌법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에 제때 대응하고, 그러한 변화 등에 발맞추어 우리의 위상에 비추어 규범성이 약했던 해양 발전 부분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산·어업 분야의 보호·육성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대로 된 법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전문 학회의 의견이 반영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에 꼭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기본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일부 규정이 있으나, 단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미래 해양수산 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바, 다시 말해 현행 헌법은 개정 후 30년이 지나 헌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외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인식과 상황 변화, 국제적인 관심사와 조류 등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발전’과 관련한 미래 지향적인 선진 법제 구축(헌법 근거 규정의 마련과 관련 기본법 규정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II. 해양의 가치

1. 해양산업과 경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국내총생산에서 해양산업(세계 1위 조선업, 해양바이오산업, 미래첨단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배 증가하는 동안 국내총생산 총액은 약 7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관문에 해당하는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 대륙의 장점과 해양의 이점을 한꺼번에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교두보인 것이다.¹⁾ 다시 말해,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을 딛고 태평양을 향한 관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와 한류인 리만해류에 그 근원을 두고 동해안은 북한한류와 동한난류가 만나서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황금어장이며 생물의 다양성과 어족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²⁾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세계 최고의 기술대국인 일본이 서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북쪽에는 21세기 에너지 강국으로 부활한 러시아가 위치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의 항만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과 첨단 IT를 활용한 특화된 서비스로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우수한 해양여건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해양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양 이용과 개발이 필요하다. 해양은 인류에게 남겨진 유일한 미개척지이자 자원의 보루로서 그 활용은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 할 것이다.

1) 육지에서 보면 바다로 나가는 시발점으로 대륙으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고 바다로는 세계 어디든지 무한정 뻗어 날 수 있는 지리적, 경제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에서 북미에 이르는 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2) 동해는 한류성 어종인 대구, 명태, 청어 등과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꽁치, 멸치, 정어리, 고등어 등이 모두 잡히는 황금 어장을 이룬다. 서해안은 우리나라 갯벌의 약 80%가 분포하며 깊이가 얕아 간척사업이 활발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남해안은 복잡한 해안선으로 만과 반도가 많으며, 멸치, 갈치, 고등어, 가자미, 굴, 미역 등이 많이 잡힌다.

2. 해양과학과 기술

최근 첨단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해양자원의 이용이 경제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해양구조물, 선박, 심해잠수정 등의 분야에서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무인선박(Unmanned Surface Vessel), 선박표면 오염방지 기술, 쇄빙선 등과 관련된 기술(바이오와 생명공학, 해양탐사와 개발)이 향후 중요한 국가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4차 혁명에 따른 해양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도 메탄수화물, 망간단괴 채굴, 해양심층수 이용, 조류, 조력, 파력, 온도차, 해상풍력 등을 활용한 발전, 해양생물을 이용한 펠프 등 다양한 소재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양의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생명공학 기술³⁾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3. 해양의 법적 가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주권, 영역, 국민이다. 그 중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써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는데, 영역은 국민 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 영토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표상의 범위로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약 3,200여개의 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총 국토 면적은 22.1만 km²로, 남한은 9.9만 km², 북한은 12.2만 km²이다. 영해는 이와 같은 연안국의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을 말하는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하층토에 미친다.⁴⁾ 영해는 연안국의 해상상의 권리가 미치는 공공물이 아니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속하는 배타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영해는 관할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이 영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가 접하고 있는 해양으로 무한정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문제가 된다.⁵⁾ 우리의 동해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의 경우 해안의 저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고(직선 기선 적용), 황해와 남해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에서 12해

3) 바닷물에 분해되는 플라스틱, 해양생태모니터링장비, 탄소흡수 및 저장기술 등의 개발과 해양오염방제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등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조, 1980.10.12. 체결, 1994.12.16. 발효, 1996.2.28. 우리나라 발효.

5) 정중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117면 참조.

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는데,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물속과 땅 속에 있는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섬 시설 및 보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연안국이 아닌 국가는 영해를 제외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배와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고, 해저에 전선, 광케이블 등을 매설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성격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3국에 대하여 항해를 비롯한 많은 자유를 허락된다. 해양은 옛날부터 교통과 통상의 요로, 자원의 채취, 과학조사, 폐기물처리 나아가서는 군사 활동 등의 많은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으며, 국가 상호간의 경쟁과 대립의 장소가 되어왔다.⁶⁾

III. 헌법상 해양수산에 관한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역대 우리 헌법에서의 해양에 관한 규정 검토

가. 역대 헌법 규정

역대 우리 헌법에서의 해양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헌 헌법(1948), 제1차 개정 헌법(1952)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2차 개정 헌법(1954), 제3차 개정 헌법(1960), 제4차 개정 헌법(1960)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6) 박배근(역), 「최신국제법」, 국제해양법학회, 1999, 355면 참조.

제5차 개정 헌법(1962)

제56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고, 제115조에 서는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6차 개정 헌법(1969)

제56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7차 개정 헌법(1972)

제95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117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0조 제1항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제2항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8차 개정 헌법(1980)

제121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4조 제1항 “국가는 농민·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제2항 “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현행헌법인 제9차 개정 헌법(1987)

제120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3조 제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나. 검토

제7차 개정당시 그 개정이유로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기하고 국력을 조직화하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치기구와 관계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의 기반을 확고히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외에 민족의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고 영구적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개헌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고, 제8차 개정에서는 그 개정이유 중 일곱 번째로 “정직하

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기풍의 조성 and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시행의무, 독·과점의 폐단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 소비자보호등 경제질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대폭 신설하여 산업의 발전과 부의 균배에 기여하도록 함.”이라고 들었다. 또한 제9차 개정에서는 그 개정이유 중 네 번째로, “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라고 들었다. 이를 살펴보면, 그 동안 아홉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사실상 해양에 중심을 둔 조항은 없었고 해양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여 관련 조항을 모두 찾아보더라도 개정이유에서조차 그에 큰 관심을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제9차 헌법 개정이유에서 처음 어민 보호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헌법에는 해양과 관련시킬 수 있는 일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어업권, 어업육성, 농어촌 개발 및 어민보호 등의 단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결국 그 동안 우리 헌법사에서 해양에 관심을 가진 조항은 없어온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다른 여러 선진 국가들을 살펴 보면 오랜 기간 해양에 관한 권리를 선점하고자 하는 야욕을 보이고 있고, 이는 헌법에의 명문화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이는 비단 형식적인 헌법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 뿐 만 아니라 명문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도 헌법해양에 관한 입법을 통해 해양법제를 갖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2. 외국의 경우

가. 헌법에 해양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국가

(1) 일본

일본은 헌법에 해양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해양과 관련된 상당수의 법령을 두고 있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

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②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海洋水産資源開発促進法施行規則],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 시행령[海洋水産資源開発促進法施行規則],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海洋水産資源開發促進法施行規則]
- ③ 독립행정법인해양연구개발기구법[独立行政法人海洋研究開発機構法], 독립행정법인해양연구개발기구에 관한 성령[独立行政法人海洋研究開発機構に関する省令]
- ④ 해양구조물 등에 관한 안전수역의 설정 등에 관한 법률[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해양 구조물 등으로 관계되는 안전 수역의 설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 ⑤ 해양 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해양 오염 등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⑥ 기름 또는 유해 액체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油又は有害液体物質による海洋の汚染の防止のために使用する薬剤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의 해양기본법은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여 해양정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징적으로는 당해 어느 한 정부부처에서가 해양에 관한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조직이 통합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해양정책담당대신과 본부 역할을 하는 내각관방대신이 부분부장을 맡으며, 나머지 모든 국무대신은 그 구성원이 되도록 조직되었다.⁷⁾

비록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을 뿐, 해양에 관하여 세부적인 많은 개별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고, 해양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해양에 관한 입법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일본의 입법을 따라간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7) 박성욱·양희철,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8, 122면.

(2) 영국

영국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명문의 헌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헌법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 하다. 일단은 해양에 대한 명문의 헌법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곳에서 논의 하는 것인데, 헌법적 가치를 입법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상당 수의 법령을 두고 있는 점은 헌법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해양 유통과 관련해서는 해양물품 운송에 관한 법, 해양 자원에 관하여는 해양 어류에 관한 법, 야생 어류 보존에 관한 법, 해양어류 조개법, 바다어업허가법 등을 두고 있고, 해양 안전에 관해서는 민간의 해양안전에 관한 법과 상선의 해양 안전에 관한 법을 둔 이래 해양안전법을 다시 제정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82년 해양법 협약에서 정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해안 및 연안 접근법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양과 관련 된 분쟁에 대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에 해양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

(1) 독일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 해양과 해운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연방과 주의 입법권이나 행정권한의 분배와 관련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72조 (1) 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 주는 연방법률을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때에 그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가진다. (3)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이와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1. 수렵(수렵허가증에 관한 법은 제외) 2. 자연보호 및 자연 경관 보호(자연보호의 일반원칙, 종 보호 또는 해양 자연보호법 제외)

제73조 (1)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사무 및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국방 2. 연방차원의 국적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등록 및 증명서 제도, 입국과 이민 및 범죄인 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도량형과 표준시 5. 관세구역 및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 및 항해조약, 자유로운 상품거래, 관세 및 국경 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제74조 (1)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7.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지원(경지정리법 제외), 식량의 확보, 농업 및 임업생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 연안어업 및 해안 보호 21. 원양 및 연안 항해 및 항로표식, 내륙 항행, 기상관측소, 해로 및 일반인 통행에 사용되는 내륙수로

결국,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권한 분배와 관련해서 해양과 관련한 규정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중앙집권형의 정부형태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모든 입법권이 국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독일식의 해양관련 헌법규정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지방분권이 개정헌법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고 이 와중에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도와 같은 내용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수도 세종, 해양수도 부산, 문화수도 광주, 경제수도 서울과 같은 방식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중국

중국의 해양에 관한 헌법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9조 광물자원 · 수역 · 산지 · 초원 · 황무지 ·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유, 즉 전 인민소유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소유에 속하는 삼림 · 산지 · 초원 · 황무지 · 개펄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며 희귀 동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든 자연자원을 침범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중국은 1970년대 유엔에 가입하고 유엔심해저위원회 및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석하면서 서부터 그들의 해양 정책을 밝히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해양강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군사적으로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대양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은 해양강국의 건설은 중국사회주의 사업과 평화발전전략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해양경제의 발전과, 해양환경 보호, 국가해양권익의 수호, 해양강국을 건설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⁸⁾

8) 박종근, “중국의 해양강국전략에 대한 소고”, 한남대동북아해양법연구팀, 학술행사 프로시딩, 2015.

한반도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세계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중국도 전통적으로 해양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며, 근대화와 개방이후에도 해양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양국가로의 굴기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소결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 이외에도 캐나다⁹⁾, 러시아¹⁰⁾, 호주¹¹⁾, 아일랜드¹²⁾, 필리핀 등에서 헌법에 해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미래의 해양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규범화함으로써 아직 확립되지 않은 해양에 대한 권리를 대외적으로 선점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헌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해양수산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국가 정책과 입법, 해양 주권과 해양 경제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선행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양에 대한 국가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IV. 헌법 개정 방안의 제시

1.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

(1) 개정의 필요성

- 9) 제91조(캐나다 연방의회의 입법 권한. 9. 표지, 부표, 등대 및 세이블아일랜드. 10. 항해 및 선박. 11. 검역 그리고 해양 병원의 설립 및 유지. 12. 해안 및 내륙 어장. 13. 캐나다와 영국 /외국 간 연락선 또는 캐나다 내 두 지역 간 연락선)
- 10) 제67조(2. 러시아연방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사법권을 행사한다.), 제71조(m. 러시아연방의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 11) 제51조, 제69조(각 주에서 다음에 나열된 공공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연방 수립 후 총독이 선언한 일자에 연방으로 이관된다. 육해군 방위, 등대, 등대선, 항로 표지 및 부표 검역), 제92조(통일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 상호 간의 통상 및 왕래는 내륙 운송이나 해상 운송을 불문하고 절대 면세이다.), 제98조(의회는 통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항해, 해운, 주 재산인 철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수 있다.)
- 12) 제2조(이는 아일랜드섬 및 아일랜드를 구성하는 여러 섬과 바다를 포함한 지역에 태어난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는 타고난 권리다.), 제9조(2. 1° 본 헌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섬들과 바다를 포함하는 아일랜드섬에서 태어난 자로서, 출생 시에 부모 모두가 아일랜드 국민이 아니거나 아일랜드 국민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일랜드 시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

헌법 제3도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와 관련하여 이를 좁은 뜻의 영토로 이해하는 견해¹³⁾와 넓은 뜻의 영토, 즉 영토, 영해, 영공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견해¹⁴⁾가 대립한다. 또한 영토에 관한 이해는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지만, 영해 범위에 관한 합의는 비교적 최근에 확정되었고, 영공의 개념과 범위는 아직 형성 중이라서 불확정한 상태에 있어서 헌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어서 헌법 제3조가 영토만 규정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⁵⁾ 영해와 영공은 영토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즉 영토가 확정되면 영해가 결정되고, 영토와 영해가 결정되어야 영공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영역이라는 말은 넓은 뜻의 영토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온 것이다.

만약 헌법 제3조의 영토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 헌법은 영해와 영공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법률을 살펴보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통해서 영해가 규율될 뿐이고 영토와 영공을 규율하는 법률은 찾을 수 없다. 이 때, 헌법 제3조의 개정의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고유영토와 관련하여 일본과는 독도와 대마도, 중국과는 간도와 이어도, 러시아와는 녹둔도와 연해가 문제 되는데, 헌법 제3조처럼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제한하면 그 밖의 지역, 특히 간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한바,¹⁶⁾ 이와 같은 주변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의 문제에 있어서도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개정 헌법 조항의 제안

현재 우리나라 영토조항으로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헌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된다.

제2항 대한민국의 영역은 영해, 해저, 하층토, 대륙붕, 기타 해저지역을 포함 한 바다 그리고 공중영역 및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모든 영역으로 구성된다.

13) 홍성방, 「헌법학(상)(제3판)」, 박영사, 2016, 80면; 허완중,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30면.

1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197면.

15) 전광석, 「한국헌법론(제11판)」, 집현재, 2016, 193면.

16)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한울아카데미, 1995, 119-120면; 최경욱, “한국 헌법 제3조와 북한과의 관계”, 「공법학연구」, 창간호, 영남공법학회, 1999, 194-195면.

2. 경제조항과 관련하여

(1) 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부 관련 정부조직은 통합과 분산과정을 반복해왔고,¹⁷⁾ 해양법 협약의 채택·발효 이후인 1996년에 해양수산부가 창설되었으며, 경찰청 산하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외청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다시 해체되어, 해양관련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수산 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분산되었다. 그 후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해양수산부는 부활되었으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은 신설된 국민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여 해양정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면서도 모든 정부조직이 통합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헌법에 해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해양강국의 건설을 목표로 해양경제의 발전과, 해양환경 보호, 국가해양권익의 수호를 강조하여 일관된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해양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주장해야 할 것은 더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정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독립적 기관의 존부자체가 위태로웠던 그동안의 경향은 정치권에서 해양에 관한 관심이 없었던 것 뿐 만 아니라 당해 기관의 존립기반이 무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에 해양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해양정책을 담당할 기관의 존립기반을 세워줌으로써, 또한 해양법제화를 위한 지침으로서 그 기초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

(2) 개정 헌법 조항의 제안

현재 우리나라 헌법조항 중 해양과 관련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17)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해양수산 업무는 상공부(수산국)·교통부(해운국)·내무부(해양경찰대)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5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산·해운·항만·해양경비 등 해양수산 업무를 통합한 조직으로 상공부 소속의 해무청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1961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무청은 폐지되고 해양수산업부는 다시 농림부(수산국)·교통부(해운국)·내무부(해양경찰대)에 분산되었다. 그 후 한일국교정상화로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수산업이 활기를 띄면서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은 수산청으로 승격되었고, 1976년에는 교통부 외청으로 항만청이 설립되었다.

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제120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해양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3항 “국가는 영해 및 배타적 경제구역 내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해양안전을 보장한다.”

3. 소결

현행 헌법은 해양주권, 해양영토, 해양수산업 등 해양과 수산 분야 일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하고, 해양환경, 해양도시, 해양안전 등 미래 해양수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발전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토대가 될 만한 규정은 사실상 두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여 국가 정책과 입법이 해양 주권과 해양 경제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해양수산 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 조성은 물론 해양자원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선진 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 지침이 되는 헌법 조항에 있어서 해양주권, 해양영토에 관련하여서는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를, 그리고 해양산업과 해양환경, 해양안전 등은 헌법 제120조에서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해양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권 조항인 제35조에 항을 추가하여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전 및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V. 맺으며

1994년 UN해양법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의 인근 바다에서는 관할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경우 또한 독도, 이어도 인근 등 우리의 해양영토 및 주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태평양, 인도양 등의 독자적 해저광구와 남북극에 걸친 과학기지 운영 등 경제활동을 통해 국익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바,(가령, 세계 각국의 해양주권 및 해양 경제관할권에 대한 첨예한 대립의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해양자원의 새로운 이용 및 적극적인 환경보호활동, 해양신산업의 창출과 이러한 산업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 등) 이를 우리나라 법규범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우리 헌법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본 규범을 두고 있는데 다만, 제9장 경제 부분 제120조 및 제123조의 어업권, 어업육성, 농어촌 개발 및 어민보호 등의 단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은 해양주권, 해양영토, 해양수산업 등 해양과 수산 분야 일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하고, 해양환경, 해양도시, 해양안전 등 미래 해양수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발전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토대가 될 만한 규정은 사실상 두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여 국가 정책과 입법이 해양 주권과 해양 경제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 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해양자원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기본 법률에 필요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선진 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인식과 상황의 변화 및 국제적 관심사와 조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규범성이 약했던 해양 분야의 발전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산·어업 분야의 보호·육성 등 ‘국가 해양수산 미래 발전의 백년대계’를 제시할 수 있는 선진 법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헌법을 비롯한 관련 기본법제 규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때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계획열, 「헌법학(상)(신정2판)」, 박영사, 2005.
- 강윤호·최성두, “통합행정체계의 논리의 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명기, “영토조항 존속의 법이론”, 「국제문제」, 제362권, 국제문제연구소, 2000.
- 도희근, “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법조」, 제59권 제11호, 법조협회, 2009.
- 박배근(역), 「최신국제법」, 국제해양법학회, 1999.
- 박성욱·양희철,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08.
- 박종근, “중국의 해양강국전략에 대한 소고”, 한남대동북아해양법연구팀 학술행사 프로시딩, 한남대동북아해양법연구팀, 2015.
- 이민호,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13.
- 이부하, “영토조항에 대한 규범적 평가”,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06.
- 이상훈,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법제」, 제563호, 법제처, 2004.
- 이석용, “동북아 각국의 해양법과 정책-해양수역과 관할권 비교연구-”, 「일감법학」, 제33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한울아카데미, 1995.
- 전광석, 「한국헌법론(제11판)」, 집현재, 2016.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 최경옥, “한국 헌법 제3조와 북한과의 관계”, 「공법학연구」, 창간호, 영남공법학회, 1999.
- 허완중, “한국 헌법체계에 비추어 헌법 제3조의 해석”,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2016.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 홍성방, 「헌법학(상)(제3판)」, 박영사, 2016.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Value in Maritime and Fisheries

Sun-ki, Hong / Mun-Chan, Kang

Professor, Training Institut of National Assembly/Student,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It is getting bigger in the possibility that a major constitutional provision will be revised with being active in a social discussion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uch as being begun a full-scale discussion by which the National Assembly was recently launched(February 2017)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reform' and was determined its committee members and advisory committee members. In the meantime, it can be considered to be the real situation that requires a systematic research with the reflection of opinions in experts from different fields and in professional academic societies so that the proper legislation can be equipped in order to cope timely with it and to suggest a vision along with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cean development section, which had been weak in the norm in light of our status keeping up with such change, and the marine fisheries sector, which is in a poor position. Accordingly, there was necessity of specifically improving the related basic law with arranging the provisions of being certainly necessary fo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professional opinions about this, in order to possibly grow into the substantial power in the marine fisheries sector through having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seas on three sides, as the motive power of national development.

Our Constitution has basic norms, which become the basic foundation for the growth in the marine fisheries sector. Still, those are just the fragmentary provisions such as the fishery right, the fisheries promotion, the farming &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nd the protection

of fishermen in Article 120 and Article 123 of the economic section in Chapter 9. Hence,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limitations as saying of failing to contain provisions pertinent to the general in the marine fisheries sector such as ocean sovereignty, marine territory, oceanography and fisheries, of failing to propose developmental vision and direction with the reflection of environmental change in maritime and fisheries such as marine environment, marine city, ocean safety, and of actually having no provision enough to be a foundation of a definite action plan. The provisions necessary fo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lated basic law need to be systematically arranged so that a firm recognition on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and maritime and fisheries can lead to what the national policy and legislation are allowed to be capable of supporting the insistence of the ocean sovereignty and the marine economy jurisdiction and also of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environmental formation for intelligence-informatization-high value-added pattern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Industry and as the eco-frie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tility of marine resources. To do this, an in-depth, methodical and advanced legislation will be needed. Consequently, it is time to research into supplementing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basic legislation related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to necessarily reflect this importance of maritime and fisheries ultimately in a constitutional amendment so that the advanced legislation can be equipped that can suggest ‘a long-range plan for future development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of the country’ such as developing marine areas, which had been weak in the norms in the meantime and as protecting and fostering the marine fisheries sector in poor position through considering the perception on the development in maritime and fisheries at home and abroad, a situational change, and an international concern, and the changes in the tides.

Key Words: Field of ocean, Maritime & Fisheries, Maritime legislation, Constitution, Territorial clause, Economic clause.